

#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수신자 : 국내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단체장  
(경 유) : 관련 담당자

## 제 목 :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촉구 의견서 및 서명 요청 건

1. 귀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2007년부터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해 정책연구, 국회 입법활동, 토론회, 국제 컨퍼런스, 유산기부 캠페인, 유산기부 역량강화교육, 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유산기부 입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지난 9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및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신 정태호 의원과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태호 의원실에서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입니다.
4. 아래 내용과 [별지 1] 내용을 참고하셔서 [별지 2] 의견서에 서명 요청드립니다.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내 용 :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의견서 서명 요청  
나. 대 상 :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다. 요청사항 : [별지 2] 단체 직인 날인 후 한국자선단체협의회로 송부  
라. 받는 이 :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메일 [charitykorea@charitykorea.kr](mailto:charitykorea@charitykorea.kr) 로 [별지 2] 송부  
마. 의견서 활용 :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에 전달 예정  
바. 마 감 : 11월 3일(월)까지  
사. 문 의 : 사무국 02-735-0067~69 / [charitykorea@charitykorea.kr](mailto:charitykorea@charitykorea.kr)

## 사단법인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담당자 유점숙

사무총장 김희정

이사장 황영기

시행 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25-83호(2025.10.24)

접수 ( )

(우)03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159 부귀빌딩 4층

홈페이지 [www.charitykorea.kr](http://www.charitykorea.kr)

전화 (02)735-0067~9

팩스 (02)735-0065

이메일 [charitykorea@charitykorea.kr](mailto:charitykorea@charitykorea.kr)

## 유산기부 입법화 촉구 의견서

2023년 한국의 총 기부금액은 약 16조 원으로 이중 개인 기부는 11.5조(72%), 법인 기부는 4.5조(2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유산기부액은 전체 기부금의 1% 이내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금 추계 방식으로는 정확한 유산기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023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의 상속·증여재산 중 약 1% 이내 수준이 공익법인에 출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유산기부 금액은 2024년 전체 기부금 5,435억 달러<sup>1)</sup> 가운데 약 8.3%에 해당하는 453억 달러(62조 6,800억원)에 달합니다(GIVING USA 2024). 또한 영국은 2012년 '레거시 10(Legacy 10)'이 입법화되어, 유산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레거시 10'은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기존 40%에서 36%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영국 Charity Commission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유산기부액은 총 41억 파운드(약 7조 6,8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모금액의 30%에 해당합니다. 이는 영국의 강력한 유산기부 문화와 제도적 지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유산기부 관련 법을 제정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은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과 복지 부담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직접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동체 화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의 세습을 일부 완화하고,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국가나 정부의 공적 제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인 가구, 비혼, 무자녀 부부 증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 소득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감소로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미치던 도움의 손길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이 절실합니다.

1) 미국 사회의 전체 기부금 5,435억 달러 중에서 개인기부 3,744억 달러(68.9%), 재단기부 1,036억 달러(19.1%), 유산기부 453억 달러(8.3%), 기업기부 202억 달러(3.7%) 차지

이에 대한민국 자선단체는 개인의 마지막 뜻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산기부(Legacy 10)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모든 자선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 1. 유산기부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과제

유산기부 운동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다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해결방안	사회적 임팩트
① 사회적 자산 환원 및 양극화 해소	개인 자산이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통해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조금이나마 해소
② 자산가 및 부유층의 기부 유도	세제 혜택을 통해 자산가들의 사회적 기부를 유도하고, 책임감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확산
③ 민간 섹터 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개인 자산이 민간 비영리 섹터로 흘러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특히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증가의 마중물 역할 수행
④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공익활동 증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활동 증대, 정부 예산으로 부족한 영역에 지속가능한 재원을 공급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
⑤ 비영리섹터 발전 및 기부문화 활성화	비영리섹터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기부문화 활성화 토대 마련

## 2. 유산기부 입법화의 핵심 요구 사항

2019년 한국갤럽이 전국 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유산기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유산기부 의향 있다 26.3%, 영국의 'Legacy 10'과 같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유산기부법이 제정된다면, 응답자의 51.6%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과 같은 'Legacy 10' 국내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 등으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의 자발적인 고액기부를 유도하고 확충된 재원으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돌봄, 환경, 문화, 의료 등 사회적 공급과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 실현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별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유산기부시, 상속세 감면)」  
에 대한 자선단체 의견 동의서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조세소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께서 영국과 같은 ‘Legacy 10(유산기부법)’ 국내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시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비영리섹터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산기부 입법화 촉구 의견서」에 동의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단체명 :

(직인)